

제284호 (2010. 11. 15)

■ 경제 동향

- 10월 CBSI 5.9p 상승한 68.5

■ 정책·경영

- CM 활성화 위해선 수요자의 필요성부터 확보해야
- “북한 건설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가능성 있어”

■ 정보 마당

- 일본 건설기술자제도의 이해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업 종사자 처우 개선해 청년 실업문 넓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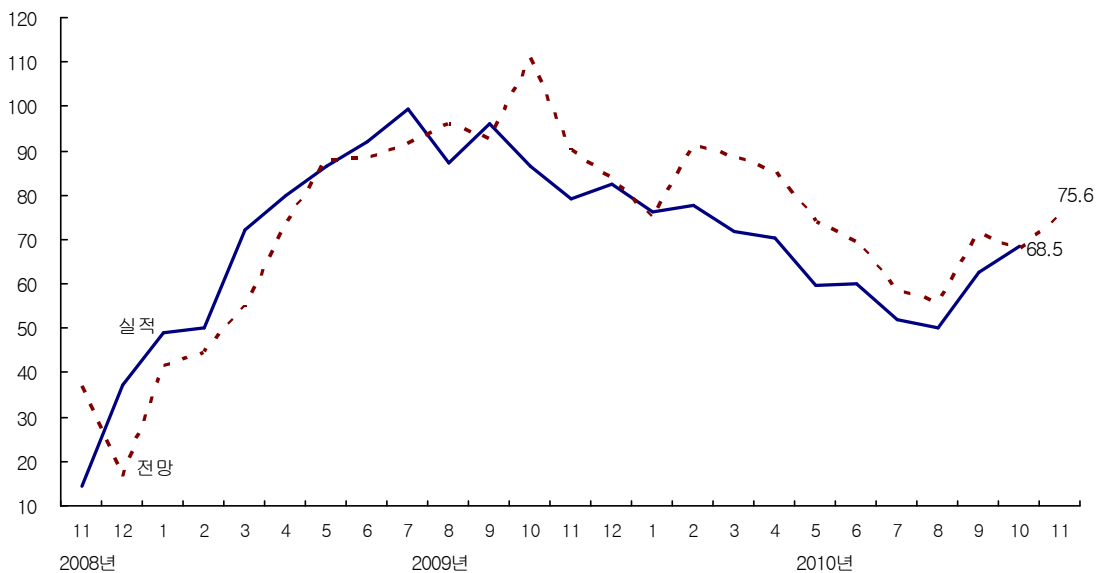
10월 CBSI 5.9p 상승한 68.5

- 2개월 연속 상승 불구, 지수 자체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 -

■ 10월 CBSI 전월대비 5.9p 상승한 68.5, 2개월 연속 상승

-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9p 상승한 68.5를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50.1)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4월 수준(70.5)에 근접함.
 - 지난 8월 이후 지수가 2개월 동안 18.4p 상승했는데, 2개월 상승폭으로는 공공 발주 급증으로 지수가 급상승했던 작년 2~4월(30.0p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임.
 - 이는 건설 비수기인 흑서기를 벗어난 계절적 요인과 함께 8.29대책 시행으로 그동안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주택경기 침체가 최악 상황을 지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기대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가 아직 7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1월 전망치도 75.6으로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볼 때 8.29대책 시행이 지수 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1월 CBSI 전망치 10월 실적치 대비 7.1p 상승한 75.6

-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7.1p 상승한 75.6을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기업들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당분간 공공 수주 부진,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8.29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CBSI가 80선을 넘어 기준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대형업체지수 큰 폭 상승, 중소기업지수는 하락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10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기업체는 도리어 하락해 대조를 이룸.
 - 대형업체지수는 전월 대비 20.3p 상승한 91.7을 기록함. 지난 7월 50.0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46.2 기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형업체지수가 지난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며(41.7p 상승) 올 2월 수준(92.9)을 회복함.
 - 중견업체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9.2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저점이 대형업체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월인 9월에 이미 69.2를 기록해 지난 3월 수준(70.4)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지수는 전월 대비 4.4p 하락한 40.4를 기록해 지난 8월의 저점(39.7)에 다시 근접했는데, 이는 3/4분기 들어서도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소기업체의 특성상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규모별·지역별 CBSI 추이>

구 분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6.3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67.6	75.6	
규모 별	대형	93.3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71.4	100.0
	중견	76.9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0	76.9
	중소	55.6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9.1	45.6
지역 별	서울	85.9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73.5	91.5
	지방	61.2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58.3	52.3

이통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북한 건설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가능성 있어”

- 개성공단급 산업단지 6곳 조성시 44조원 규모 건설수요 발생 -

■ 체육·종교시설,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을 위해 파생적인 건설수요 발생

- 2003년에 준공된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 개성공단 조성사업,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북한 내 교회와 사찰, 병원, 공장 등의 건설공사를 남한 건설회사가 수행
- 북한 내 건설공사 수행시 기술인력, 건설 장비, 각종 건설자재 등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을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입, 북한은 토지, 인부, 골재 등을 제공

<남북한 간 건설사업 추진시 시사점>

구분	조사 내용	시사점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을 남한에서 공급(정주영체육관, 봉수교회, 평양자동차, 금강산지구,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본격적인 북한 내 건설사업 추진시 건설장비 및 자재 등의 확보 대책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 연결공사 완료 시점(2004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해상운송, 이후에는 주로 육로를 통해 북한에 건설장비 및 자재 공급(금강산지구, 평양대마방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교통 인프라 확충 수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 남북한 간의 원활한 물류망 확보를 위해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항만시설 현대화 등 북한 내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서 제공받은 인력의 건설 숙련도 미흡, 별도의 교육 및 현장지도 실시(정주영체육관) • 북한 건설인력에 대한 남한측 통제 장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필요 • 북한 건설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 내 공장 건설 유형 - 남한 건설사 시공(평화자동차, 금강산지구 등) - 북한에서 직접 시공(평양대마방직) • 북한이 직접 공장 건설공사 수행시 자금 부족 등으로 공기 지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건설사의 북한 내 공장 등의 직접 시공 확대 또는 남북 공동 건설공사 추진 필요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자금은 당사자가 조달(정주영체육관, 조용기심장병원 등) • 일정 부분 부담하고 정부(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이 있었음(평양 봉수교회, 금강산 신계사). • 민간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자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남북협력기금 등) 방안 강구 필요
건설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남북 출입시설,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추진 및 완료 • 평양~개성 고속도로 및 신의주~개성철도 개보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사회문화 협력 및 민간 경제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에 상응하여 건설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하고,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건설수요도 증가 • 남북 긴장관계 완화시 북한 내 SOC 시설에 대한 건설 수요 다수 발생 가능성 큼.

- 남북 협력사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남북연결 도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 완료
 - 2005년 12월에는 문산~봉동 간 궤도부설공사 완료

■ 개성공단급 산업단지 6곳 개발시 약 43.9조원 규모의 신규 건설수요 발생 추정

- 신규 건설수요 43.9조원 중 남북한 정부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 공사비는 약 4.7조원, 공장 건설비는 약 39.2조원 규모
 - 본 건설수요 추정에서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된 연결 도로 및 철도, 항만, 발전소와 같은 각종 인프라 시설, 배후도시, 공단 내 공용시설 등은 본 수요 추정에서 제외
- 수요 추정에서 제외된 부분을 감안하면 북한 내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잠재적 건설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자원 및 관심 개요

- 북한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은 남한의 한정된 건설수요를 확장하는 것으로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북한 내 6개 산업단지 건설 수요 추정 내역>

구 분	유형 1	유형 2	소계	비고
개발 지역	개성 2·3단계	나진-선봉,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6개	
개발 규모(평)	500만	각 600만 (600만×5개)	3,500만	1개 산업단지 규모 600만평
입주 기업(개)	1,700	10,000 (2,000×5개)	11,700	1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2,000개
기반시설 건설비(억원)	6,834	40,670 (8,134×5개)	47,504	공단 연결 도로,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비용과 배후도시 등의 건설비용 제외
공장 건설비(억원)	56,950 1,700×3,350백만원	335,000 (2,000×3,350백만원×5개)	391,950	평당 150만원 수준
건설비 계(억원)	63,784	375,670	439,454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CM 활성화 위해선 수요자의 필요성부터 확보해야

- 방식, 서비스제공 범위 등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 국내 CM시장의 당면과제

- 1997년 1월부터 건산법에 CM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했음. 도입 당시 선진국형 CM제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음.
- 2010년 국내 CM시장의 규모는 양적으로는 급격한 팽창을 했으나 최근 들어 시장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고유의 책임감리제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시장 확대는 물론 CM 기능과 역할 재편론도 제기되기 시작 함

■ 국내 공공시장에서 CM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들

- CM의 본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CM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CM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조직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것으로 인식
- 민간시장은 활발한 반면 공공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공공시장의 비활성화 요인은 사업 성공에 대한 주인인식 부족과 함께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기 때문임.
 - 2001년 말 준공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이 2010년 10월 28일로 미뤄졌음에도 준공계획이나 예상투자비와 실적에 대한 비교 평가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함.
- 시장에서는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건설관리(CM), 책임감리, 검측감리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CM과 책임감리로 법제화되어 유연성이 매우 부족. 도입 예정인 시공책임형 CM방식도 기존 법·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움.
- 수요자의 눈높이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급자의 역량에 비해 수요자의 수준역시 높지 않은 것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임.

■ 활성화의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제안

- CM방식과 서비스제공 범위를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 혹은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도록 개선 필요
 - 「건설법」과 「건기법」에 포함되어 있는 CM 발주방식을 다루는 「국계법」으로의 이관하여 단일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수요자가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책임자 지명제 및 사업의 공기, 예산 및 품질 확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평가제가 정착되어야 함.
- 공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도입된 공공관리자 제도에서 위탁 CM을 지명할 수 있도록 조치.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정부가 지정하는 대리인 자격에 CM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국제표준회계제도(IFRS)의 도입에 따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C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 공급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역량 등급별 요구사항 및 지식교육과정, CM의 전문부문(예 :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별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국내 CM의 전문지식 역량이 높아지도록 하여 CM서비스 수요자가 만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CM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국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반드시 CM방식 도입을 강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발주자의 필요성에 의한 선택적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의무제 도입은 또 다른 배타적 업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공공사업에서 C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책임자 지명제와 함께 목표 공기와 예산, 품질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발주자 역량 제고에 피드백 되도록 하는 발주자 책임제와 역량 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서비스공급자가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발주자의 기득권과 마찰을 발생시켜 적대적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공공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자제해야 함.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일본, 자격증별로 시공 및 엔지니어링업역 엄격 구분

- 시공에서는 1급 시공관리기사가, 엔지니어링에서는 기술사가 최고 기술인력 -

■ 건설 기술자 자격 체계,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로 양분

- 일본 「건설업법」(제4장 제26조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설치 등)에 의하면 건설 기술자는 크게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로 양분되어 있음.
 - 즉, “건설업자가 청부받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제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의 관리를 맡은 사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각 자격증별 등급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1급 시공관리기사와 1급 건축사, 그리고 기술사가 모두 동등하게 1급 국가자격자로 분류됨.

<일본의 건설업법상의 기술자제도 개요>

공사 현장 배치 기술자	감리기술자	주임기술자
원청공사에 포함된 하청합계 금액	3,000만엔 이상 (건축공사일식은 4,5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 (건축공사일식은 4,500만엔 미만)
기술자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국가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시공관리기사 - 1급건축사 - 기술사 ○ 실무경험자(단, 지정 7개 업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임기술자로서의 요건을 만족한 자로서 원청으로서 4,500만엔 이상의 공사에 2년 이상 지도감독적인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국토교통대신특별인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국가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시공관리기사 - 1급건축사 - 기술사 ○ 2급 국가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시공관리기사 - 1급기능사 - 전기공사사 - 소방설비사 등 ○ 실무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 고졸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기타 요건	수주업자와 직접적이고 항상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일 것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 또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된 중요한 공사로서 청부금액이 2,500만엔 이상인 공사는 현장 전임이 필요함	
	현장 전임이 필요한 공사의 감리기술자는 자격자증의 휴대가 필요함	불필요
	현장 전임이 필요한 공사의 감리기술자는 등록강습을 5년 이내에 수강할 필요가 있음	불필요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 시공 부문에서는 1급 시공관리기사가,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기술사가 최고 기술인력

- 시공관리기사와 기술사의 업역 및 자격 체계도 우리나라와 상이해서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면 기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즉, 각 자격증별로 시공과 엔지니어링 부문의 업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
 - 다이세이 등과 같은 제네콘은 1급 시공관리기사와 1급 건축사를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며, Nippon Koei와 같은 토목 엔지니어링(컨설팅) 업체는 기술사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수행함.

<일본의 건설 기술자 종류 및 자격 체계>

구분	체계	종류	자격 요건	관할/면허발급기관
시공관리기사	- 1급 시공관리기사	- 토목시공관리기사 - 건축시공관리기사 - 管工事시공관리기사 - 造園시공관리기사	- 4년제 대학의 지정학과 졸업 여부, 단기대학, 고등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의 학력에 따라 실무 경력 3~13년 요구 -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의 지정학과 졸업+3년 실무 경력+시험	국토교통성
	- 2급 시공관리기사	- 건설기계시공기사 - 전기공사시공관리기사	- 학력 수준에 따라 1~8년의 실무경력 필요 - 일반적으로 지정된 대학 학과+1년 이상 실무 경력+시험	
건축사	- 1급 건축사	- 구조설계 일급 건축사 - 설비설계 일급 건축사 - 관리 건축사 (실무 경험의 종류 및 연한에 따라 구분)	- 학력 여부에 따라 2~4년 실무경력 요구 - 일반적으로 지정된 대학(건축/토목)+2년 건축 실무경험+시험 - 그 외 국토교통성 대신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국토교통성
	- 2급 건축사 - 목조건축사	-	- 학력여부에 따라 1~7년(무학) 실무경력 요구 - 일반적으로 지정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의 건축전공(실무경험 無) 또는 토목전공(건축실무 경험 1년) 실무 경력 달리 필요 -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도도부현
기술사	- 건설 부문을 포함한 20개 분야에 기술사 존재	-	- 학력에 따라 3~15년의 실무경력 요구 - 2급 건축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 요구 - 일반적으로 지정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3년, 지정학교 이외를 졸업한 경우에는 4.5년+시험	문부과학성

주 : 1) 시공관리기사의 경우와 기술사의 경우 실무경력도 지도 감독적 실무경험을 1년 이상 포함하여야 함. 지도 감독적 실무 경험이란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공사 주임, 설계 감리자, 시공감독 등의 입장에서, 부하·하청에 대해서 공사의 기술면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한 경험을 의미함.

2) 본 표는 면담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임.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8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고용개선대책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내용에 대한 논의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감사환경 콜로퀴움’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SOC 및 민자사업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
11.9	공공발주기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선진화사무국 주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체계 워크숍’에 건설관리연구실 장철기 연구위원 참여 - 건설산업선진화방안 추진 체계에 대한 자문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특전사 영외숙소 이전 사업 시설공사 패스트 트랙 실시절계 심의에 이영환 실장 참여
11.10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자문
	정희수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희수의원실 주최 ‘입주자대표회의 법적지위와 주택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제2주제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와 주택법’에 대한 주제 발표 관련 토론
11.1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과 주최 해외건설 진흥방안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
	김기현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실 주최 ‘지역경제 지속 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SOC정책토론회’에서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주제 발표 - 발표 주제 :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SOC 투자 정책방향

■ 연구원 발간물 현황

유형	발간물명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과 ‘공익’을 위한 ‘공법적 성격’이 결합된 제도로서 ‘공익’을 위한 ‘공법적 성격’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내용과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함. - 본 보고서는 공공계약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 특히, 중대한 공공계약 질서 위반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하고 현실과 거리가 있거나 불명확한 기준 등은 현실감 있게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제시
자료집	독일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숙련인력 육성 및 높은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 검토 - 독일의 건설산업은 ‘마이스터’(Meister)로 대표되는 고숙련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돼 품질 좋은 생산물을 책임 시공한다고 자랑하며, 페이퍼컴퍼니는 없음. - 건설 분야의 마이스터는 상당히 높은 사회적 명성과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밝은 직업 전망과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기반으로 숙련인력 기반이 구축됨.

건설업 종사자 처우 개선해 청년 실업문 넓히자

건설업계에 전가의 보도처럼 전해왔던 ‘건설업은 사람이 재산’이라는 금언이 있다. 실전 활용 가능한 노하우는 장시간에 걸쳐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건설업계에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최근 국내외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원전 현장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국내 일반 건설현장 역시 숙련인력 부족이 심각해 현장에서는 숙련수준의 저하로 품질 저하·재시공 증가·하자 증가 등의 폐해가 야기되고 있다. 건설업의 재산인 사람이 부실해지면서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주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의 재산인 사람이 부실해진 데에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최근 친서민·상생·일자리·공정 등이 화두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감과 정부 대책에서 건설근로자의 실태가 자주 거론되었다. 일을 한 시점에서 2~3개월이 지나서야 지불되는 유보임금, 하루 두 명 꼴의 사망자, 30년 근속자의 평균 연간 소득이 천 8백만원, 국민연금 적용률 28% 등. 이것이 건설업의 재산인 기능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이다. 우리의 자식을 건설현장에 보낼 수 있을까. 청년층의 지속된 진입 기피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업보다.

우리는 지금 건설업을 살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숙련인력의 육성이 절실하다.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데 평균 5년이 소요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설현장의 공법 변화와 세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인 건설산업 차원에서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주도하도록 하되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숙련이라는 생산 요소의 특징은 사람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인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명확한 직업전망을 보여 주어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주를 위해 손쉽게 낮출 수 있는 것이 노무비이고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결국 공공공사의 과도한 예산 절감은 향후 국민의 유지관리비 증가와 숙련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올 들어 건설관련 공고생들 중 취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고 한다. 건설업의 재산인 사람이 소중히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청년실업과 고령화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건설업과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코앞의 10% 예산 절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람은 건설업의 소중한 재산이어야 한다. <아주경제, 2010년 10월 19일>

심규범(연구위원 · gbshim@cerik.re.kr)